

의안번호	제 843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1년 10월 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#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4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10월 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제14조(특별휴가) 제1항의 규정 중 오자를 정정하고,
- 제4항의 소속직원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조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오자 수정(안 제14조 제1항 관련)
  - “별표 3”을 “별표 4”로 정정 \* 경조사별 휴가일수표
  - 별표 4 관련조문 정정
-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부여일수 확대(안 제14조 제4항)
  -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 : 20일
  -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 : 20일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##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별표 3”을 “별표 4”로 한다.

제14조제4항 중 “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은 15일”을 “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은 20일”로, “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5일”을 “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0일”로 한다.

별표 4 중 “제13조제1항”을 “제1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특별휴가) ① ----- ----- <u>별표 3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~③생략</p> <p>④ ----- <u>재직기간이 10년</u> <u>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</u>은 10 <u>일,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</u> <u>무원은 15일, 30년 이상 재직한</u> <u>공무원은 15일의 휴가</u>를 받을 수 있으며, ----- -----.</p> <p>⑤~⑧생략</p>	<p>제14조(특별휴가) ① ----- ----- <u>별표 4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~③생략</p> <p>④ ----- <u>재직기간이 10년</u> <u>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</u>은 10 <u>일,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</u> <u>무원은 20일, 30년 이상 재직한</u> <u>공무원은 20일의 휴가</u>를 받을 수 있으며, ----- -----.</p> <p>⑤~⑧생략</p>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지방공무원법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.